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95
------	------

2024. 9.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김경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해당 조례에도 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제16조의2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클래더가 ESG 경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임.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국내 또한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기적으로 ESG 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대기업에서 ESG 경영 선언을 발표해 왔으며, 정부에서는 2023년 9월 ‘ESG 평가기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입법적인 노력으로 「국민연금법」은 투자 시 ESG 경영사항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하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사업자의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시행 중임.

- 다만,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ESG 경영 관련 규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으로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며, 각종 포럼과 협약 등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

또한 23개 산하기관(공기업 6, 출연기관 16, 자원봉사센터)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SG 평가지표를 일부 도입하여 운영 중임.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노력(안 제16조의2)

- 개정안은 120다산콜재단이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재단은 2023년부터 사업계획에 ESG 경영을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10개의 전략과제 및 17개 세부지표를 작성하여 이행한 결과, 공공 콜센터 및 서울시 출연기관 중 최초로 ‘대한민국ESG대상’을 수상한 바 있음.

- 특히 상담사 재택근무 상시화 및 감정노동 특화 건강관리 지원 등 대부분의 직원이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업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운영 등 고용부분에서도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4년에는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내용 연수가 경과되어 불용처리 예정인 PC를 ‘몽골 재활용 컴퓨터 도서관’에 기부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와 폐기물 감소에 기여한 바 있으며,

재단 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간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수목과 야생화로 정원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시민과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자율에만 맡겼던 ESG 경영을 입법화함으로써 운영 기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9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 경, 김기덕, 김영철,
박승진, 서준오, 왕정순,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한 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해당 조례에도 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제16조의2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6조의2(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¹⁾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ESG경영 추진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확인결과 기시행사업²⁾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경우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24년 서울시 예산 기준 **30,764,458천원** 출연 예정임

2) 120다산콜재단 주요업무 추진 계획

< ESG 가치 기반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 및 적용 >

사업개요

○ 목 적: ESG 경영 고도화와 실천을 통해 공공분야 사회적 책임 이행

○ 내 용: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경영 환경 개선, 친환경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2024년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발췌